

## ●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-50호

「방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6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#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·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·징수 금지(안 제43조제2항)

-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\*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·징수할 수 없도록 함

\*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(현재 한국전력공사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
- 전자우편 : [shindongjae@korea.kr](mailto:shindongjae@korea.kr)
- 팩스 : (02) 2110-0136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(전화 (02) 2110 - 1409, 팩스 (02) 2110-0136, 전자우편 [shindongjae@korea.kr](mailto:shindongjae@korea.kr)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cc.go.kr>) 「정책/정보센터-법령정보-입법예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